



제42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체계 개선 및 실태조사 실시의
법적 근거 마련〉

■ 고동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351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3
-----------------	---

I. 개요

1. 고동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35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고동진의원 등 17인
- (2) 제 안 일 : 2025. 7. 8.
- (3) 회 부 일 : 2025. 7. 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보조기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가 보조기구의 교체 주기, 품목 기준, 급여 수준 등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다양하고 개별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의족과 같은 고가 보조기구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되지만, 현행 제도상 극히 제한된 금액만 급여 대상이 되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며, 그로 인해 이동권, 건강권, 노동권 등 기본권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현행 제도는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실태조사나 정기적 제도 개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사용자 중심의 정책 설계가 어렵고, 보조기구 품목이나 교체 주기도 시대 변화나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보조기구의 적정한 교체주기, 품질 기준, 지원 수준을 장애 유형, 개인의 필요, 소득 수준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보조기구의 합리적인 교체 주기, 품목 기준 등을 설정·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장애인의 소득 수준,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65조의2(장애인보조기구 지원체계의 개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개별적 필요를 고려하여, 장애인보조기구의 합리적 교체 주기, 품목 기준 및 적정 지원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구의 교체 주기, 품질 기준, 지원 비율, 대상 품목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되, 장애인의 소득 수준, 장애 정도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장애인보조기구 사용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u>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u> <u>③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2. 검토의견

- 개정안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 개인 특성에 기반한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기준 마련 및 정기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당사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로 보임.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¹⁾에 따르면, 장애인보조기기 관련 상담·평가(18.2%) 및 사용 교육·훈련(19.5%) 경험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맞춤 개조·보완(31.1%), 개인 특성에 맞는 상담·안내(24.7%), 지원 품목 확대(11.5%)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취지는 합리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보조기기법」이라 함)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기’에 포함되는 개념²⁾으로, 현재 동 법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

및 하위 법령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기 활용보장 및 촉진, 관리, 관련 조치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장애인보조기기법」 제2조 및 제4조),

① ‘장애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장애인보조기기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장애인보조기기법」 제5조제4항 및 시행령 제2조),

② 장애인의 소득 수준,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내구연한(교체 주기), 품질 기준, 지원 비율, 대상 품목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200만원 내, 최대 3개 품목의 보조기기를 무료로 교부함(참고자료 1: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품목 등).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개요>

- ☐ (사업목적)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 복지 증진 도모
- ☐ (법적근거) 「장애인보조기기법」 제8조(보조기기 교부 등)
- ☐ (예산) '25년 5,079백만 원 (국비, 보조율 서울 50%, 그 외 80%)
- ☐ (교부사업) 기초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44개 품목 무료 교부
 - 교부신청(시군구 및 읍면동) → 자격검토(시군구)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 맞춤형 상담 및 평가(보조기기센터) → 교부결정(시군구) → 교부(보조기기업체등) → 사후관리(보조기기센터)

2) 「장애인보조기기법」 제정 당시 ‘보조기구’와 ‘보조기기’의 용어 사용 관련, 각각 김정록의원안과 이명수의 안안이 논의되었으나, 증가하고 있는 수요층과 이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더 넓은 개념인 ‘보조기기’를 사용하기로 함.(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2013).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활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정록의원 대표발의, 1902106호,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1902118호)

아울러, ③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2항에서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지원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이미 관련 정책의 법률상 근거를 「장애인보조기기법」에 두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장애인복지법」에 유사한 내용을 별도로 다시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로, 2015년 12월 「장애인보조기기법」 제정(2016년 12월 시행)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정의 및 지원 사업 실시 근거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인 제65조만 남고,³⁾

제66조(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등), 제67조(장애인보조기구업체의 육성·연구지원 등), 제68조(장애인보조기구 연구개발의 지원 등)는 「장애인보조기기법」으로 이관되었음.

<관련 법령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① “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지원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장애인보조기기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장애인·노인 등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이 자아를 실현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3) 다만, 제65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구의 품목·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지원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음.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들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들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들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기기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보조기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기기 교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들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

2. 제1호에 필요한 비용 지급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은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적용하고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조기기 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보조기기의 교부·대여·사후관리 및 비용 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보조기기업체의 육성·연구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조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생산장려금 지급, 기술지원, 우수업체의 지정, 연구개발의 장려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장려금 지급, 기술지원, 우수업체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보조기기 연구개발의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에 관한 연구개발활동 및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령」

제2조(보조기기 실태조사)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보조기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조기기의 이용 실태

2. 보조기기의 품목·지원방법 등에 대한 수요

3. 보조기기의 생산·판매·유통·대여·수입·수리 등의 산업동향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조기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보조기기의 종류) 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 치료용 보조기기

2. 기술 훈련용 보조기기

3. 보조기 및 의지(義肢)

4. 개인 관리 및 보호용 보조기기

5.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6. 가사용 보조기기

7. 가정·주택용 가구 및 개조용품

8.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용 보조기기

9. 물건 및 기구 조작용 보조기기

10. 환경 개선 및 측정용 보조기기

11. 고용 및 직업훈련용 보조기기

12. 레크리에이션용 보조기기

1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장애인등을 위한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기(참고자료 2: 보조기기 품목 분류체계)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의 품목을 고시하여야 한다.(참고자료 3: 다른 법령에 의한 보조기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제3조(보조기기의 교부등의 신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이하 “보조기기의 교부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보조기기의 교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2. 보조기기의 대여 또는 사후관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제4조(보조기기의 교부등의 결정)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등의 장애 유형·정도 및 경제 상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에 해당 보조기기의 신청에 대한 상담 및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보조기기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

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그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1. 해당 보조기기가 의료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2.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기재된 보조기기 신청인의 장애 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별도의 장애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그 진단을 의뢰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원래의 장애 상태
2. 현재의 장애 상태
3. 재활의료 등에 보조기기가 필요한 경우 해당 보조기기의 종류 및 처방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를 교부하거나 대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 대상 품목(이하 “품질관리 대상 품목”이라 한다)에 속하는 보조기기 중에서 해당 보조기기를 교부하거나 대여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 대상 품목이 아닌 보조기기를 교부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1. 제2항 단서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 결과 품질관리 대상 품목이 아닌 보조기기의 교부 또는 대여가 필요한 경우
2. 교부하거나 대여하여야 할 보조기기가 식사 등에 필요한 필수 생활용품으로서 장애인등이 사용하기에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장애의 특성 및 정도를 고려하여 품질관리 대상 품목이 아닌 보조기기를 교부하거나 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보조기기의 교부등의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기기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뢰서(제4조제3항에 따른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단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기를 직접 구입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의뢰서를 발급받은 보조기기 신청인은 그 의뢰서를 지역센터의 장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보조기기업체(이하 “보조기기업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뢰서를 제출받은 지역센터의 장 또는 보조기기업체는 해당 의뢰서에 따라 보조기기 신청인에게 보조기기의 교부등을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기기의 교부등의 비용 지급기준 등)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등을 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청구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른 진단서가 있는 때에는 그 진단서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등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보조기기의 교부등에 관한 비용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기기 교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2. 보조기기 대여·사후관리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기기 신청인이 부담

3. 관계부처 및 단체의견

가. 보건복지부

□ 2015년 「장애인보조기기법」 제정(2016년 시행)으로 기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세부 규정은 삭제되고 「장애인보조기기법」에서 규정하게 되었으므로, 동 규정을 「장애인복지법」에 신설하는 것은 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현행 「장애인보조기기법」 규정과 중복*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장애인보조기기법」 제3조(정의) 및 시행규칙 제2조(보조기기의 종류), 법 제5조(기본 계획 수립 등) 및 시행령 제2조(보조기기 실태조사) 등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품목 등〉

연번	품목명		장애 유형	지원기준액	내구연한
1	욕창예방 방석		심장	35만원	3년
2	욕창예방 매트리스		심장	38만원	3년
3	음성유도장치(음성신호기 리모컨)		시각	3만원	2년
4	음성시계		시각	5만원	2년
5	신호장치		청각	58만원	3년
6	진동시계		청각	5만원	2년
7	롤레이터(보행차)		지체·뇌병변	25만원	5년
8	좌석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37만원	5년
9	탁자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40만원	5년
10	음식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지체·뇌병변	5만원	1년
11	섭취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지체·뇌병변	5만원	1년
12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지체·뇌병변	5만원	1년
13		보조	접시 및 그릇	지체·뇌병변	5만원
14	기기		음식 보호대	지체·뇌병변	5만원
※ 음식섭취 보조기기(10~14번 품목)의 경우 5개까지 교부 가능					
15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지체·뇌병변	170만원	3년
	※ 대상자 범위 : 19세 이상				
16	소리증폭기		청각	80만원	3년
17	영상 확대 시스템(독서확대기)		시각	270만원	4년
18	OCR 장치 및 OCR 소프트웨어		시각	80만원	5년
19	목욕의자		지체·뇌병변	60만원	5년
20	DAISY 플레이어 및 전자책 리더		시각	100만원	4년
21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지체·뇌병변	53만원	8년
22	이동변기		지체·뇌병변	60만원	5년
23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35만원	4년
24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15만원	2년
※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의 경우 2개까지 교부 가능					
25	휠체어 액세서리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10만원	2년
※ 휠체어액세서리의 경우 2개까지 교부 가능					
26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지체·뇌병변	25만원	5년

연번	품목명	장애유형	지원기준액	내구연한
27	환경 제어 장치	지체·뇌병변	40만원	3년
28	대화용장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89만원	3년
29	지지대 및 손잡이	지체·뇌병변	20만원	5년
	※ 지지대 및 손잡이의 경우 2개까지 교부 가능			
30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대·전동침대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120만원	10년
31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기	지체·뇌병변	150만원	5년
32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	지체·뇌병변	130만원	3년
33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지체·뇌병변	5만원	3년
	※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의 경우 2개까지 교부 가능			
34	소변수집장치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120만원	3년
35	전자기기 작동 및 제어를 위한 보조기기용 액세서리(스위치)	뇌병변	16만원	3년
	※ 컴퓨터 및 의사소통보조기기(AAC) 입력을 도와주는 대체입력장치(스위치)에 한함			
36	개인 비상경보 시스템(낙상알림기)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93만원	5년
37	독서용 탁자, 책상 및 기립형 책상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100만원	3년
38	기억 지원 보조기기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10만원	5년
39	차량 내 착석을 위한 좌석과 방석, 액세서리, 개조용품	지체·뇌병변	240만원	3년
40	키보드(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	시각	40만원	5년
41	텍스트음성변환(TTS) 장치 및 소프트웨어	시각	85만원	3년
	※ 소프트웨어에 한함			
42	다기능 의사소통 시스템(영상전화기)	청각	120만원	4년
43	수동 조작용 팔 지지대	지체, 뇌병변	290만원	5년
	※ 책상 고정형에 한함			
44	전동칫솔	지체, 뇌병변	35만원	2년
	※ 세척물 흡입 기능이 있는 칫솔에 한함			

〈참고자료 2: 보조기기 품목 분류체계〉

※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따른 품목 분류체계는 대대 분류(3개)/대분류(12개)/중분류(124개)/소분류(779개)로 분류되어 있음.

- ① **생명활동 보조기기**는 개인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신체적 및 심리적 기능을 훈련하기 위한 보조기기, 신체 보호를 위한 보조기기 등이 해당되며, 세부 종류(소분류)에는 기립을 위한 지지대, 손가락 및 손 운동장치, 욕창예방 방식 등이 포함됨.
- ② **의지·보조기**는 해부학적 구조를 대체하기 위하여 신체에 부착되는 보조기기(의지)와 신경근골격계 기능 또는 움직임 관련 기능을 지지하기 위한 보조기기(보조기)가 해당되며, 세부 종류(소분류)에는 손 의지, 발 의지, 허리 보조기, 목 보조기 등이 포함됨.
- ③ **일상활동 보조기기**는 옷 입고 벗기, 일상적 돌보기를 지지하기 위한 보조기기, 이동하기 위한 보조기기, 움직임과 자세유지를 위한 보조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기기 등이 해당되며, 세부 종류(소분류)에는 장애인용 의복, 목욕의자, 지팡이, 보행차, 휠체어,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 등이 포함됨.

[별표 1]

보조기기 품목 분류체계

1. 생명활동 보조기기

1 04 측정, 자극, 또는 생리학적 / 정신적 기능 훈련용 보조기기 (ASSISTIVE PRODUCTS FOR MEASURING, STIMULATING OR TRAINING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FUNCTIONS)

개인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평가하는 보조기기, 신체적 및 심리적 기능을 자극하거나 훈련하기 위한 보조기기

"의료적 치료"에 사용되는 보조기기가 포함됨

보건의료전문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보조기기는 제외됨

교육 이외의 기능이 있지만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는 장치는 주요 기능을 다루는 범주에 포함

1 04 03 호흡용 보조기기 (Assistive products for respiration)

사람의 호흡을 보조하는 장비

1 04 03 03 흡입 공기 전처리 장치 (Inhaled-air pretreatment devices)

주변으로부터 공기를 흡수하고 공기를 가온, 냉각, 청소함으로써 사람이 흡입하기 전에 생리학적으로 처리하는 장치

1 04 03 06 흡기 장비 (Inhalation equipment)

흡기를 보조하거나 수증기, 가스, 액체 스프레이나 미세먼지의 형태로 약물 투여를 돕는 장치

제트 디스펜서, 자동 흡입 디스펜서, 압력 호흡기, 초음파 분무기, 여과기, 용량 조절 에어로졸이 있는 분무기가 포함됨

1 04 03 12 인공호흡기 (Respirators)

호흡이 곤란한 사람을 위하여 코, 입, 또는 기관절개시 공기 파이프의 인공구멍을 통해 인공환기를 제공하는 장치

주변 공기를 여과 및 정화하는 여과기 및 인공호흡기, 지속적 기도 양압, 이단 기도 양압이 포함됨

1 04 03 18 산소 공급장치 (Oxygen units)

농축된 산소 가스를 코나 입을 통해 제공하여 호흡을 도와주는 장치

주변 공기로부터 산소를 농축하는 장치가 포함됨

1 04 03 21 흡인기 (Aspirators)

폐의 분비물 또는 물질을 빨아들이는 장치

1 04 03 24 호흡용 벤치 및 쿠션 (Benches and cushions for respiration)

사람이 숨을 쉬거나 폐로부터 분비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세유지 장치

1 04 03 27 호흡근육 훈련기 (Respiration muscle trainers)

사람이 호흡할 때 저항을 가하거나 흉벽에 직접 압박을 가하여 호흡근육을 훈련시키는 장치

흡입 및 배출에 저항을 주는 마스크가 포함됨

1 04 03 33 목젖 지지대 (Uvula supports)

자유로운 호흡을 위하여 목젖을 지지하는 장치

호흡을 지속시키는 장치, 코골이 방지용 장치가 포함됨

1 04 06 혈액순환 치료용 보조기기 (Assistive products for circulation therapy)

수동적 또는 능동적 압축에 의해서 혈액순환 기능을 보조하는 장치

1 04 06 06 팔, 다리, 기타 신체부위용 부종방지 스타킹 (Anti-oedema stockings for arms and legs and other parts of the body)

수술 후 부종과 정맥류 상처를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신체쪽으로 압력이 단계적으로 하강하는 의복류

튜브형 탄성 부종방지 붕대, 혈액순환 문제로 인한 부종의 감소 또는 방지용 팔과 다리용 스타킹이 포함됨

1 04 06 09 공기주입식 의류 및 압박 장치 (Air-filled garments and compression units for circulation problems)

공기가 주입된 압박의복 및 압축기로 구성된 장치로 손상된 신체 부위 주변을 감싸 압박 강도를 주기적으로 변화시켜 순환을 돕거나 순환 기능 문제로 발생한 부종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

1 04 08 신체 조절 및 개념화를 위한 보조기기 (Assistive products for stimulating body control and conceptualization)

몸의 자세와 조절 또는 압력에 대한 신체 개념화를 촉진시키는 의류; 일상활동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되는 의복류. 압박 의류, 붕대, 테이핑이 포함됨

1 04 09 광선치료용 보조기기 (Assistive products for light therapy)

1 04 09 03 자외선 A(UVA) 램프 (Ultraviolet A (UVA) lamps)

피부 상태의 치료를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장파장 자외선 치료 램프 등, 이하 생략.

〈참고자료 3: 다른 법령에 의한 보조기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별표2]

다른 법령에 의한 보조기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1. 고령친화제품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용품 또는 의료기기"로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대상
2. 보조기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서 규정하는 보조기기
3. 보조공학기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규정하는 보조기기
4. 보철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2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기기
5. 복지용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는 보조기기
6. 재활보조기구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2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서 규정하는 보조기기
7. 정보통신보조기기 :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로 설립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규정하는 보조기기